

#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제3556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12. 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, 세외수입·예치금회수 등을 세입으로 하고 고유목적사업비·예치금 등을 세출로 하는 기금에 관하여,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맞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<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>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23년도말 조성액	2024년도 운용 계획			2024년도말 현재액
		수입	지출	증감	
계	0	0	0	0	0
관광진흥기금	0	0	0	0	0